

※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(2020.06.25 이후)만 인정됩니다

구분	필수	해당자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	본인	- 접수 장소에 비치 - 인터넷청약(청약홈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복무확인서		-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해당지역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
	○		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	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제외, 인터넷청약(청약홈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신분증사본	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도장		-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- 발급일확인(용도:아파트계약용) / 본인발급용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서		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해외체류 기간 확인 후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(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6.25일)까지)
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	
노부모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-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, 피부양 직계 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,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[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]
		○	부양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	직계존 비속	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세대원(부양가족)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(20.06.25일)까지)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'상세' 로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'상세' 로 발급)
대리인 신청서	○		당첨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		용도 : 아파트계약 위임용 [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]
	○		위임장	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	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